

보도자료

2014년 10월 24일(금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
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기민 주무관(☎2110-1528) minkim@kcc.go.kr

방통위, 2014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-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-

2014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가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.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, 합병·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.

※ 위치정보사업자 :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(신고 사업자)에게 제공하는 사업자(현재 이동통신사,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25개)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는 10월 24일 「2014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」을 발표하였다. 이는 지난 2월에 발표한 「2014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」의 일환으로, 방통위는 지난 5월 제1차 심사 시 7개 업체, 8월 제2차 심사 시 4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.

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ekcc.go.kr>)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,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(02-2110-1524)로 제출하면 된다.

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,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, 올해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 허가 심사이다.

붙임 1. 2014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

붙임 2.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사항 (끝)

2014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

방송통신위원회는『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위치 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, 2014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2014년 제3차 허가 심사

- 접수기간 : 2014. 10. 28(화) 09:00 ~ 2014. 11. 10(월) 18:00
 - ※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,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·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서도 함께 접수
- 접수방법 : 전자민원센터(<http://ekcc.g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
- 구비서류 : [온라인 접수] 허가 신청서, [방문제출] 사업계획서
 - ※ 사업계획서의 경우,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, 사본 15권, CD 1벌 방문 제출
- 심사절차 : 신청서 접수 → 임원결격 여부 심사 → 심사위원회 구성 → 허가 심사 →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→ 허가서 교부
- 심사항목 :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,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

<관련 규정>
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~제7조
-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(고시 2012-40호)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(고시 2012-18호)

□ 방문 접수처 및 문의

- 접수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
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(427-700)
- 문의 전화번호 : 02-2110-1524 (박찬욱)

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사항

1. 「위치정보사업 허가」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

○ 사업계획서는 전체 요약문(25쪽 이내)과 기본사항, 영업계획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(표지 포함 전체 150쪽 이내)

- (기본사항) 법인의 명세 및 조직,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
- (영업계획)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,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등
- (기술계획) 시스템 구성 및 운영계획,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

2. 「위치정보사업 허가」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

○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사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실시

<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>

심사항목	사업계획서 기재사항	점수
기본부문	· 재무구조의 건전성	8
영업부문	·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	8
	· 소요설비 추정 및 설비투자 계획의 적정성	4
	·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	4
	· 자금조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	4
	·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	2
	· 보호 계획의 수립 및 관리	6
	· 인적보안	6
기술부문	·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·확장 및 배치계획의 우수성	25
	·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설비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	5
	·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	8
	· 위치정보 수집 및 열람 사실 확인자료 관리	6
	· 시스템·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	14
총 점		100

※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(고시 2012-40호) 참조